

가정상담

5 2021
통권 453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LITIGATION TEL. 02-753-753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소는 4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부 방문단 일행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관련 기사 33번)



지난해부터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온 본소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하여 지난 4월 5일 문을 열었다. (관련 기사 34번)

www.lawhome.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❶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상담통계 ②
- 17 • 특집 ❷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소송구조 사건 분석 ③
- 25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⑤
- 26 • 가정폭력상담실
- 27 • 어떻게 할까요
- 29 • 좋은 책
 프롤레타리아의 밤
- 30 • 실습소감문
- 32 • 결혼과 인생(218) 만화일기
 오늘... 감사합니다 _ 장차현실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선암사 동백꽃〉





가정의 달에 다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가족 구성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이어 있는 5월은 그래서 가정의 달입니다. 때로 챙겨야 할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들이 의례적인 행사가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보지만 이러한 일들도 모두 소중한 삶의 한 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으며 우리 사회와 가정의 급격한 변화를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낯설게 여겨지겠지만 중년 이상이라면 ‘농촌 총각들의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196,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농촌 이탈이 심화되면서 농촌 미혼 남성들의 결혼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했던 것입니다. 1988년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일반적으로 혼인적령기라 했던 20~34세 미혼남녀의 비율이 읍 지역은 100대 49.6, 면 단위 이하는 100대 30.7이었습니다. 또한 면 단위 이하 지역의 25~29세 남녀 비율은 100대 20.8이었습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남녀성비 불균형 문제를 비롯해 수입 농산물 개방 등 당시 농촌이 당면한 현실을 비관한 농촌 남성들의 자살사건이 이어지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사회면에 관련 기사가 실릴 정도로 농촌 총각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모습이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정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총인구의 4.9%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인구 전체에서 비율이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는 사회학적 방법론에 비추면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출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만 7,939명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출생아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고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즉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상황에서 전체 출생아 수 자체가 워낙 줄었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생아가 감소하긴 했으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특정한 현상은 과제를 동반하며 그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 사회의 도덕과 역량을 보여 줍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진행하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시민 사회 전체가 보다 성숙한 자세와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기 농촌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활발해지고 다문화가정이 등장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가정문제로 일반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기부터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로 온 동남아 지역의 여성들이 처음에는 가정문제의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결혼을 한국에 오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 가족 간 갈등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결혼 이민자들도 혼인, 가정, 가족의 의미에 대해 더 진정성 있게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문화가정이 우리를 다문화사회로 견인하고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의등장이 보여주듯 우리 가

정의 전반적인 모습들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다변화되는 가족 형태와 개인 권리의 보장에 대한 확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 민법 제781조인 부성 우선 원칙 폐지와 함께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 가정폭력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해서도 건강가정기본법 3조는 가족을“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라고 규정하면서 사실혼 등 비혼 동거를 가족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나아가 민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상담소에서는 이미 오래 전 여성가족부가 생기기 전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담소의 경험에 의하면 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와 관습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성동본 금혼의 철폐나 호주제 폐지가 그 방향성이 옳지 않아서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큰 산을 넘어 왔으니 앞으로 성평등, 부부평등,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기하는 방향이라는 대전제 아래 법 개정과 제도, 관습의 변화와 확립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며 앞서 가족법개정 전반을 선두에서 이끌어온 온 상담소는 앞으로도 그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무슨 날이어서가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의 삶과 가정,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 마음을 되새기고 나누는 귀하고 좋은 시간을 하루 빨리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 상담통계 ② 다문화가정

본소의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건수가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74.3%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2.2배 증가

한국인 남편 방문 65.0%, 외국인 아내 방문 35.0%

한국인 남편은

기타, 아내의 가출, 자신의 아내 폭행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기타, 남편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안 받으면 외도한다고 생각한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생활이 문란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지냈다. 2달 전 아내가 또 의심
을 해 싸우고 집을 나왔다. 아이가 보고 싶어 집에 가보니 같
은 국적의 남자를 숨겨 놓고 있었다. 그 남자의 옷가지며 물
품이 여기저기 있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오히려 나더러 나가
라며 소리를 쳤다. 경찰에 신고 후 확인하니 10년 전부터 알
던 사이였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한국인 남편

- 같은 국적의 다른 남자를 집에 숨겨놓고

오히려 나더러 나가라고 소리쳐!

외국인 아내

- 혼인 직후부터 계속 남편 폭력에 시달려

이혼 요구했더니 몸만 나가라고 해!

- 외도, 의부증, 거짓말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아내는 2015년 몽골에서 왔다. 나와 23세 차이가 난다.
아내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 의부증이 심해 내가 전화를

- 남편의 주벽, 폭력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남편과 3년 전 혼인하였고, 중국에서 왔다. 혼인 직후부
터 남편은 주벽이 있어 술을 마신 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

다. 무서워서 각방을 쓰고 있는데 엇그제는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폭행을 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 번은 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긁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었는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부터는 나에게 생활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몸만 나가라고 하였다. 결혼하면서 내가 가져온 물건들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다. 이혼하고 내 물건들만이라도 가져오고 싶다.

한국인 아내

- 혼인신고 후 중국인 남편과 중매인 모두 연락 두절!

● 남편이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잠적한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여성)

10년 전에 절에 다니다가 우연히 조선족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다. 그 여자가 자신의 친척 중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같이 중국에 가게 되었다. 상대는 한국말을 전혀 못했고, 나보다 12살 아래였는데 나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한국에 무척 오고 싶어해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 후 상대가 한국에 오자마자 상대와 조선족 여자 모두 연락이 두절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조선족 여자 역시 계획 하에 내게 접근했던 것 같다. 그 채로 10년이 지났다. 먹고 살기 바빠 그냥 지냈는데 이제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외국인 남편

- 아내와 생활양식 차이로 힘들어!

● 아내와 생활양식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프랑스 남성)

나는 젊어서부터 집은 그냥 잠을 자는 곳이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가 울고, 아내가 큰 소리를 내고, 처가 식구들이 집에 와 있는게 너무 힘이 들었다. 아내가 처가 식구들과 한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 같이 살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그래서 일 끝나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웃에 있는 타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 그런데 아내와 술 마시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다투다가 화가 나서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2020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 총 건수는 904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708건(78.3%),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196건(21.7%)이었다.¹⁾

이혼상담 건수, 실제 이혼 건수의 74.3%에 달해

2021년 3월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174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217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건수는 904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74.3%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부부들은 다양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 절차 및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였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여성 91명, 남성 3명)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 주요 발견 사항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2.2배 증가(2010년 29.4%→2020년 65.0%)

한국인 남편 방문 65.0%, 외국인 아내 방문 35.0%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보다
1.9배 더 많아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40대가 가장 많아

한국인 남편이 17세~30세 이상 연상 29.3%
(일반가정 이혼상담 5.3%)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교육정도 낮아
(한국인 남편의 25.7%, 외국인 아내의 14.0% 중졸 이하)

재혼 비율 37.5%(일반가정 이혼상담 19.7%)

한국인 남편의 86.6%, 외국인 아내의 90.5%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혼인신고 후 47.7%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기타, 아내의 가출, 자신의 아내 폭행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기타, 남편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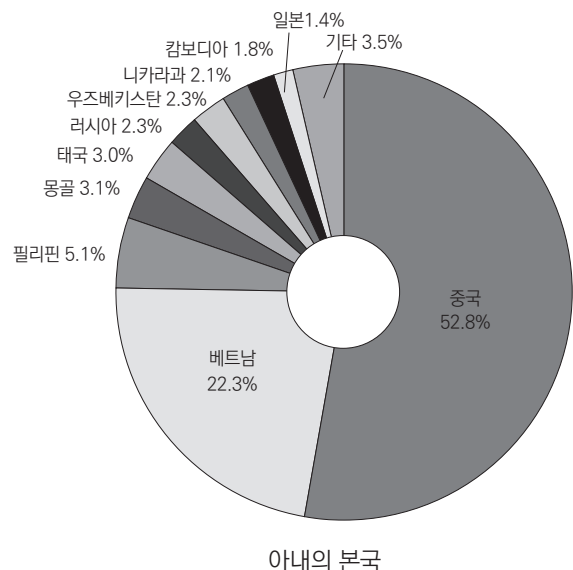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외국인 아내 방문 35.0%, 한국인 남편 방문 65.0%

한국인 남편 이혼상담이 외국인 아내 이혼상담보다
1.9배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708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48건(35.0%),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460건(65.0%)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이 1.9배 많았다.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9년 61.8%, 2020년 65.0%)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708명 중 중국이 374명(5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58명(22.3%), 필리핀 36명(5.1%), 몽골 22명(3.1%), 태국 21명(3.0%),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각 16명(각 2.3%)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4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9.3%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40대 213명(30.1%), 50대 176명(24.9%), 30대 156명(22.0%), 20대 86명(12.1%), 60대 이상 41명(5.8%), 10대 2명(0.3%)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293명(41.4%), 60대 이상 230명(32.5%), 40대 125명(17.7%), 30대 52명(7.3%), 20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25명(3.5%),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600명(84.8%),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43명(6.1%), 미상인 경우는 40명(5.6%)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176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5~16년 77명(12.8%), 7~8년·13~14년 각 62명(각 10.3%), 11~12년 56명(9.3%), 1~2년 47명(7.8%), 3~4년 41명(6.8%), 9~10년 38명(6.3%), 5~6년 35명(5.8%), 31년 이상 6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2년 차이가 24명(5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5~6년 13명(30.2%), 3~4년 6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26살 차이가 나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어지간하면 아내에게 맞춰 주려 노력하며 살았다. 그런데 아내는 성격차이를 주장하면서 이혼을 요구해왔다. 아내는 며칠씩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았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어린 아이를 챙기며 지내야 했다. 5년 전에는 쌍방 폭력으로 두 사람 모두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내는 오로지 국적 취득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 내게 늘 돈만 요구했었는데 화가 나고 억울하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20대 베트남 여성)

남편과 24살 차이가 난다. 2년 전 혼인하였고, 나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잘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매일 술을 몇 병씩 마시고 욕설을 퍼부었다. 밤에도 술을 사오라고 하였고, 잠도 못 자게 밤새 괴롭힌 후 회사에도 못 나가게 하였다. 퇴근 후 들어오면 늘 취해 있었고, 바지에 볼일을 보는 등 알콜중독증세가 심했다. 공장에 다니며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이 난다. 이혼하는 방법?

외국인 아내에 비해 교육정도 낮은 한국인 남편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23.2%(164명), 남편 33.0%(234명)]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6.5%(46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7.3%(52명)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없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0.3%(2명)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의 비율도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한국인 남편 25.7%, 외국인 아내 14.0%).

외국인 아내는 주부, 한국인 남편은 무직이 가장 많아 부부 모두 재산 없고 월수입 낮아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178명, 25.1%), 한국인 남편은 무

직(152명, 21.5%)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3.8%, 한국인 남편은 61.9%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0.5%(641명)와 한국인 남편의 86.6%(613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5.5%(605명), 한국인 남편의 63.3%(448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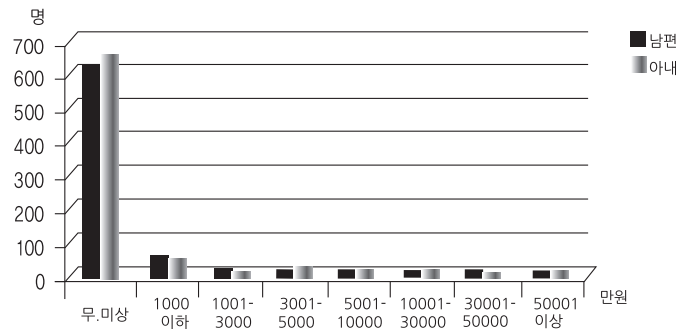
● **경제갈등, 빈곤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베트남에서 온 지 10년되었다. 남편은 장애2급으로 일을 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시부모님 집에서 생활하였고, 이제껏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보지 못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모두 생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시부모와 시누이들과만 의논할 뿐 나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였다. 아이를 생각하며 참고 살았는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우울증과 탈모 증세가 심해졌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나만 희생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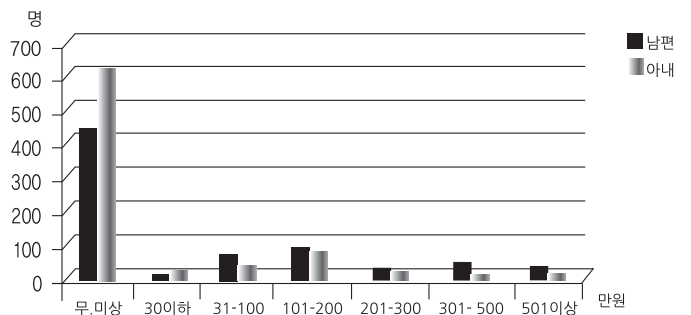
● **경제갈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남편과 22살 차이가 난다. 나는 중국에서 왔다. 남편은 돈도 없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돈 벌 생각을 안한다. 한 달 30만원 정도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 남편은 초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아내로 소개하지도 않고 시댁에도 데려가지 않는다. 이혼하고 싶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 보유액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 수입별



**다문화가정 이혼상담 재혼 비율 37.5%,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26.1%(185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9.6%(68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5.1%(36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2.8%(161명), 미상 36.4%(258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7.5%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19.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38.6%(273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4.1%(29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도 4.1%(29명)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27.9%(197명)[남성 초혼-여성

재혼(5.1%, 36명), 남성 재혼-여성 재혼(22.8%, 161명)] 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4.1%(29명)이었다. 외국인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을 때에는 본국에 생활비를 보내는 문제,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 양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혼 후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온 사례(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둘 다 재혼으로 만났고, 상대는 중국인이다. 13년 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상대방과 혼인신고하였다. 내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증세가 심해져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였더니 이혼을 요구해왔다. 혼인 초부터 상대의 성격이 매우 괴팍해 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또 이혼하기 싫어 참고 살았다. 나는 미장일을 하는데 상대가 나를 따라다니며 일을 많이 배웠다. 자신이 번 돈은 모두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아들은 중국에서 그 돈을 받아 큰 아파트도 샀다. 그런데 이번에 이혼 말이 나오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 중 절반을 달라고 한다. 그 보증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기여도는 하나도 없다.

● 재혼 후 경제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중국 국적 아내와 혼인 후 딸 한 명을 두었다. 아내와는 재혼으로 만났고, 15살 차이가 난다. 아내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돈을 번다면서 밖으로만 돌았다. 아내의 전혼 자녀를 데려다 한국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비용이 3천만원 들었고 전액을 내가 지원해 줬다. 그래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다. 아내는 여전히 사치와 낭비만 일삼으며 자기 생활만 할 뿐 가정일은 돌보지 않는다.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혼하고자 한다.

전체의 47.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2.8%(20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4.4%(31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7.5%(53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7.9%(56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14.7%(104명), 10년 이상은 49.4%(350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47.7%(338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60.4%(20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년 이상~10년 미만 17.2%(58명), 3년 이상~5년 미만 8.9%(30명), 2년 이상~3년 미만 5.6%(19명), 1년 미만 4.1%(14명), 1년 이상~2년 미만 3.8%(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51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27명에 달했다. 즉,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52.9%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563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311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55.2%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러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사유,
남편의 가출 순으로 이혼상담

한국인 남편은 기타사유, 외국인 아내의 가출,
자신의 폭력 순으로 이혼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248명)

- 1위 '남편의 폭력'(민법 제840조 3호)(54.8%, 136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경제갈등, 전과/복역, 장기별거, 성격차이·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6호)(19.0%, 47명)
- 3위 '남편의 가출'(2호)(7.7%, 19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460명)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거짓말,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애정상실 등이 우선 순위임)'(6호)(41.1%, 189명)
- 2위 '아내의 가출'(2호)(28.0%, 129명)
- 3위 '자신의 아내 폭행'(내담자 3호)(20.2%, 93명)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력'이 54.8%(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9.0%(47명), 2호 '남편의 가출' 7.7%(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0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260명)가 제시한 사유 역시 3호(남편의 폭력 48.3%, 1,573명),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빚, 폭언, 알콜중독 순 31.4%, 1,024명), 2호(남편의 가

출 11.3%, 369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사유와 동일하였다.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54.8%)을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그 비율도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본 상담소의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편의 폭력을 문제 삼은 경우(48.3%)보다도 비율이 높아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받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보면, 외국인 아내들은 우선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해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이유도 모른 채 남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외국인 아내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47명 중 '경제갈등'이 27.7%(13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전과/복역' 25.5%(12명), '장기별거' 19.1%(9명), '성격차이'·'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8.5%(각 4명), '빚'·'알콜중독'·'시가와의 갈등'·'자녀양육갈등' 각 2.1%(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 남편의 전과/복역, 가출, 빈곤 사례 (내담자 40대 러시아 여성)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후 첫 아이 가졌을 때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출소 후에도 남편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남편은 신용불량자이기도 했다.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는데 시부모와 남편 형이 있었으나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다. 남편을 비롯해 시부모는 수시로 내게 돈을 요구했다. 나는 어학 과외를 하며 한 달에 150만원 가량 벌었는데 월세에 공과금 내고 나면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자 남편은 가출 후 연락을 끊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월세로 방을 얻었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름없는데 남편이 있어 지원

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하던 과외도 끊겨 생활이 더 곤궁해졌다. 이혼하고 싶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및 가출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21세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왔다. 그런데 혼인 직후부터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맞았다.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그 때뿐이었다. 아이들 보며 참고 살았다. 그런데 1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고, 생활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1년 만에 겨우 연락이 닿아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다시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는 내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및 경제갈등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22살 때 한국에 왔고 23살에 딸을 낳았다. 남편과는 15살 차이가 난다. 남편은 이발소를 운영했다. 그런데 10년 전 가게를 접은 후부터는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다. 결국 내가 공장에서 미싱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남편은 술을 마신 후 특하면 내게 돈을 요구해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나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겁이 나서 처벌을 요구하지는 못했다. 폭언은 늘 입에 달고 살았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용기를 내 이혼하고자 한다.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41.1%(18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 28.0%(129명), 내담자 3호 '자신의 아내 폭행' 20.2%(9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89명 중 '장기별거'가 75.1%(1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거짓말' 5.3%(10명), '성격차이' 4.8%(9명), '배우자의 이혼강요' 3.7%(7명), '애정상실' 2.6%(5명), '불신'·'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각 1.1%(각 2명), '경제갈등'·'도박'·'대화단절'·'시가와의 갈등'·'처가와 의 갈등'·'고부갈등'·'쇼핑중독' 각 0.5%(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0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979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배우자의 이혼강요, 거짓말, 정신병 순 56.5%, 553명), 2호(아내의 가출 23.0%, 225명), 3호(아내의 부당대우 13.3%, 130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들이 제시한 사유 중 3순위는 '자신이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20.2%를 차지하였다. 즉, 한국인 남편들 중 20.2%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고 자신의 폭력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상담해 왔다. 이는 체류 또는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국인 아내들이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 남편들 중에는 아내가 먼저 외도나 가출을 일삼아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호소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내의 유책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내의 가출, 거짓말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25살 차이가 나는 태국 여성과 혼인하였다. 같이 태국에 다녀왔는데 장모가 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었다. 이후 사이가 나빠졌고, 상대는 집을 나간 후 연락해도 잘 받지 않았다. 상대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업소 사장에게 내가 자신을 때렸다고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어 인근 CCTV를 모두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다시 상대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왔는데 변한 게 없었다.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상대는 거기서도 똑같이 내가 자신을 때려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이 왔다. 나도 더 이상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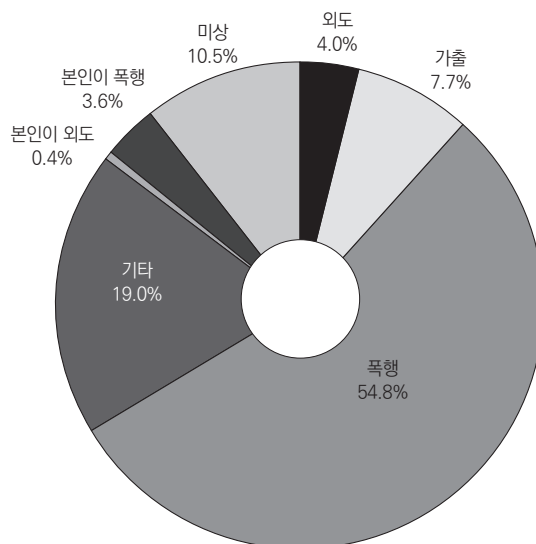
● 자신이 아내 폭행,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9년 전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주여성쉼터에 기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것이 있는 것 같다. 5년 전부터 갑자기 아내가 달라졌다. 내게 계속 싸움을 걸어오며 폭력을 유발하였다. 아이를 자기가 양육하면 한국에서 사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것 같다. 이혼 후 베트남 남자를 불러들여 살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나도 이혼을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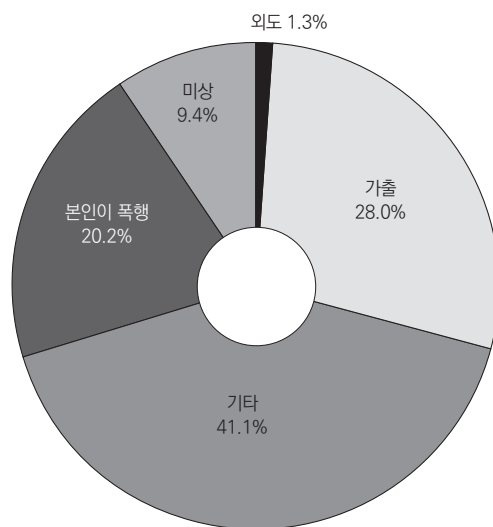
● 아내의 가출, 별거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상대는 2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왔다. 결혼 후 4개월

만에 갑자기 돈을 벌겠다고 집에서 1시간 거리 기숙사로 들어갔다. 몇 개월 일하더니 이번에는 대구로 가겠다고 하였다. 대구로 간 후에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대구에서 코로나가 퍼지자 아예 핑계 삼아 오지 않았다. 다니는 공장이 휴가인 것을 아는 데도 일을 해야 한다며 오지 않았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는 결혼이 목적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것 같다. 상대와 혼인하는 비용으로 3천만원이 넘게 들었다. 겨우 3-4개월 살았는데 억울하다. 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오지는 않는다. 이혼하고 상대를 베트남으로 추방했으면 한다.



아내가 상담



남편이 상담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이혼상담(총 904건) 중 21.7%(196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보다 16.8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196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11건(5.6%),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185건(94.4%)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16.8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이라크, 이집트, 프랑스 순

그 외 대만, 스페인,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 말리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196명 중 중국이 69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 42명(21.4%), 미국 40명(20.4%), 이라크 6명(3.1%), 이집트 5명(2.6%), 프랑스 4명(2.0%), 대만·스페인 각 3명(각 1.5%), 캐나다·뉴질랜드·스위스·네덜란드·우즈베키스탄·베트남·방글라데시 각 2명(각 1.0%), 영국·호주·아르헨티나·말리·터키·케냐·몽골·파키스탄·스리랑카·태국 각 1명(각 0.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일본, 미국, 이라크, 이집트, 프랑스, 대만·스페인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본국이 일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스

위스 등 경제적 사정이 비교적 나은 경우에는 한국인 아내가 혼인신고 후 남편의 본국으로 출국을 원하였으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출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방글라데시, 케냐,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등인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 여성과 혼인했으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11명)

- 1위 '자신의 아내 폭행'(내담자 3호)(36.4%, 4명)
-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차이)'(6호)(18.2%, 2명)
- 3위 '아내의 폭력'(3호)(9.1%, 1명)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185명)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성적 갈등, 신체적 질병, 무시/모욕,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 우선 순위임)'(6호)(47.0%, 87명)
- 2위 '남편의 가출'(2호)(25.4%, 47명)
- 3위 '남편의 폭력'(3호)(8.6%, 16명)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자신의 아내 폭행'이 36.4%(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8.2%(2명), 3호 '아내의 폭력' 9.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폭행한 후 찾아온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한국인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자신의 한국 내 체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였다. 한편, 외국인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는 모두 성격차이였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47.0%(8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25.4%(47명), 3호 '남편의 폭력' 8.6%(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7명 중 '장기별거'가 80.5%(7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8.0%(7명), '생활무능력'·'성적 갈등'·'신체적 질병'·'무시/모욕'·'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2.3%(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발견 사항 요약

2020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 총 건수는 904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708건(78.3%),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196건(21.7%)이었다

2021년 3월 1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6,174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217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904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74.3%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708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48건(35.0%),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460건(65.0%)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9배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이 5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2.3%, 필리핀 5.1%, 몽골 3.1%, 태국 3.0%,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각 2.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

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정 5.3%/다문화가정 29.3%).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9.7%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37.5%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1.9배 가량 높았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가 낮은 중졸 이하의 경우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한국인 남편 25.7%, 외국인 아내 14.0%).

외국인 아내의 90.5%와 한국인 남편의 86.6%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5.5%, 한국인 남편의 63.3%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47.7%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5년 이상~10년 미만 17.2%, 3년 이상~5년 미만 8.9%, 2년 이상~3년 미만 5.6%, 1년 미만 4.1%, 1년 이상~2년 미만 3.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기타사유, 남편의 가출 순으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기타사유, 외국인 아내의 가출, 자신의 아내 폭행 순으로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 문제가 여전한 과제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 현실적 지원 절실

I. 서언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¹⁾ 아동복지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시설보호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가

필요한 아동보호체계로 평가되고 있다.²⁾ 이러한 가정위탁은 위탁형태에 따라 대리양육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위탁아동의 상당수는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위탁아동의 친권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자녀(위탁아동)에 필요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소재는 파악되지만 교류가 단절된 경우, 나아가 친권행사를 하지 않거나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위탁아동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위탁부모들은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므로,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이 있는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탁부모의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대리권한 관련 법규는 미비한 실정이고,³⁾

1) https://www.fostercare.or.kr/business/?mode=business_01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안내 중 가정위탁보호 참조.

2) 강현아·정익중·강향숙, 2019 가정위탁아동 패널연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9), 122쪽.

3) 반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탁부모들은 친권자의 동의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부딪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담현장에서는 친권자의 실질적 부재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위탁 아동의 학교 관련 행정서류 제출과 의료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개설, 여권 발급, 문화바우처 이용 등에 큰 불편이 생기고 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위탁가정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가정위탁지원센터(현 아동권리보장원)로부터 사례를 위탁받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본소의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소송구조 사건은 2016년 6건으로 시작하여 2017년 8건, 2018년 22건, 2019년 24건, 2020년 5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소가 2020년 한 해 동안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송구조 사건(52건)⁴⁾의 상담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서면 및 법원의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탁현황, 소송사유 및 소송결과를 분석하고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소송구조 대상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1) 성별

2020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42가정으로 위탁부모 42명, 위탁아동 48명으로 나타났다. 위탁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8명(19.0%), 여성 34명(81.0%)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제930조 제1

항), 위탁부모 중 위탁모의 신청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 29명(60.4%), 여아 19명(39.6%)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위탁부모의 연령은 30대부터 70대까지 나타났는데, 이중 50대(5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33.3%), 40대(11.9%), 30대(4.8%)의 순이었다. 50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소송구조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4-7세 20명(41.7%), 8-13세 19명(39.6%), 14-19세 5명(10.4%), 1-3세 4명(8.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취학 시기가 다가오거나 아동이 취학한 이후에도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 처리 등의 문제들이 이어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친부모의 존재여부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 38명(79.2%), 친부모가 없는 위탁아동 10명(20.8%)으로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4) 2020년 가정위탁아동 관련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42가정(위탁부모 42명, 위탁아동 48명)이었으나, 친권상실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여 총 52건으로 산정되었다.

〈표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위탁부모	성별	남성	8	19.0
		여성	34	81.0
	연령	30대	2	4.8
		40대	5	11.9
		50대	21	50.0
		60대 이상	14	33.3
	계		42	100
위탁아동	성별	남아	29	60.4
		여아	19	39.6
	연령	1-3세	4	8.3
		4-7세	20	41.7
		8-13세	19	39.6
		14-19세	5	10.4
	친부모 존재여부	있음	38	79.2
		없음	10	20.8
	계		48	100

2. 가정위탁 현황

1) 보호유형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보호유형별 비율은 일반위탁이 25건(59.5%), 대리양육위탁이 11건(26.2%), 친인척위탁이 6건(14.3%)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나 친인척양육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가끔 연락이 되어 친부모의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위탁의 경우는 친부모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부모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탁기간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은 36-72개월 미만(33.3%)과 12-36개월 미만(31.0%)이 비슷한 수준으로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1-12개월 미만(21.4%), 72개월 이상(14.3%)의 순이었다.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가 47.6%에 달하여 가정위탁이 장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탁아동의 경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상당 기간을 위탁가정에서 보내게 되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한편 대리양육이나 친인척위탁의 경우, 아동을 한참 동안 보호하다 위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양육기간이 위탁기간보다 더 긴 것으로 보인다.

〈표 2〉 가정위탁 현황

위탁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계		42	100
보호유형	대리양육	11	26.2
	친인척	6	14.3
	일반	25	59.5
위탁기간	1-12개월 미만	9	21.4
	12-36개월 미만	13	31.0
	36-72개월 미만	14	33.3
	72개월 이상	6	14.3

3) 위탁사유

중복적으로 위탁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복수로 분석하였다. 위탁사유는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가 22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이혼 10건(23.8%), 베이비박스에서 유기된 경우가 8건(19.0%), 미혼모시설/입양시설에 맡겨진 경우와 부모가 수감 혹은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경우가 각 7건(각 16.7%),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부모가 위탁이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각 6건(각 14.3%), 학대가 3건(7.1%)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정위탁이 필요

한 사유는 친부모의 연락두절과 양육포기 및 이혼과 사망 등으로 인한 친가정의 해체 등으로 앞으로도 친부모의 돌봄이나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위탁사유

위탁 사유 (중복 가능)	구분	빈도 (건)	비율 (%)	전체 (건)	전체 (%)
	부모의 사망	6	14.3	42	100
	부모의 가출/연락두절	22	52.4	42	100
	부모의 이혼	10	23.8	42	100
	부모의 수감/질병	7	16.7	42	100
	부모의 학대/방임	3	7.1	42	100
	베이비박스 (아동일시보호소)	8	19.0	42	100
	미혼모시설/입양시설	7	16.7	42	100
	부모의 위탁/입양 의뢰	6	14.3	42	100

Ⅲ.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1. 사건별 분류

2020년에 진행한 소송구조 총 52건을 살펴보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25건(48.1%)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위탁아동을 대신하여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한 특별대리인⁵⁾ 선임이 12건(23.1%) 진행되었다. 또한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도 12건(23.1%), 위탁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의 친양자 입

양 허가 사건이 1건(1.9%)이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 사건도 2건(3.8%) 있었다.

2. 소송사유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 원인으로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을 꼽았다(38건, 73.1%). 또한 위탁아동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소송을 결심한 경우도 4건(7.7%)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친권자가 아동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지급하고, 아동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가 10건(19.2%)으로 나타났다.

3. 소송 결과 및 기간

2020년에 진행한 사건 중 2021년 4월 현재까지 30건(57.7%)이 종결되었다. 취하 4건, 각하 1건을 제외한 25건의 사건이 전부 결정을 받았다.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종결되었고, 성변경 및 친양자입양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16건(53.3%), 3개월 미만이 9건(30.0%),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5건(16.7%)이었다. 소송이 대체로 6개월 안에 종결되었으나, 위탁부모들이 서류를 준비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친권자의 주소 파악이 어려워 관할이 이송되는 등으로 전체 체감 소송 기간은 1년에 육박하고 있다.

5)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이들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등의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사 등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으며, 특별대리인의 선임·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참조). 한편 친권자는 자신과 자녀 사이 또는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6) 참조). 이는 후견감독인이 없는 후견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민법 제949조의3 참조).

〈표 4〉 소송 상황 및 기간

항목	구분	빈도 (건)	비율 (%)
계		52	100.0
사건명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25	48.1
	특별대리인 선임	12	23.1
	미성년후견인 선임	12	23.1
	친양자입양	1	1.9
	성변경	2	3.8
소송 사유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	38	73.1
	정체성 혼란, 위촉	4	7.7
	친권남용	10	19.2
소송 현황	종결	30	57.7
	진행	22	42.3
소송 기간	3개월 미만	9	30.0
	3-6개월 미만	16	53.3
	6개월-1년 미만	5	16.7
	총 종결사건	30	100.0

〈표 5〉 소송 결과

종결사건	결과			승소율 ⁶⁾ (%)
	승소	기각	기타 ⁷⁾	
계	25	0	5	100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9	0	2	100
특별대리인 선임	9	0	1	100
미성년후견인 선임	7	0	2	100

6) 승소율 : (승소)/(승소+기각)

7) 총 5건(취하 4건, 각하 1건)으로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취하 2건,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 취하 1건,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취하 1건, 각하 1건이다.

8) 본소는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상실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도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2016년에 연락두절된 친권자의 친권상실을 전제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바 있었다(원심: 대구가정법원 2016년단100177, 항고심: 대구가정법원 2016브1073, 재항고심: 대법원 2017스561). 하지만 원심은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려면 친권자가 없거나,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소는 원심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친권자가 생존하는 경우 친권상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성년후견 개시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친권상실 심판청구 절차의 복잡성이나 친권상실 심판청구는 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미성년후견인선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IV. 소송구조 사례 및 문제점

1.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민법상 친권상실의 청구권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정되어 있다(민법 제924조 제1항). 그런데 위탁아동은 친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혹시 찾더라도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나서 이를 청구하는 사례도 보기 어렵기에 절차의 지연이 충분히 예상된다. 결국 자녀가 직접 친부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별도의 심판을 필요로 한다.⁸⁾

본소는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신속하게 선임되는 것이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혹은 친권의 일부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별도로 필요하고,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이나 친부모 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법원의 보정을 통해서만 이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부모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청문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례 1>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취하

내용

위탁아동은 18년 10월경 출생하였다. 위탁아동의 모는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한 후 위탁아동을 출산하게 되어 양육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탁아동의 모는 위탁아동을 위탁 의뢰하였고, 교회 지인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부모)와 만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인후보자는 19년 5월 ○○시장으로부터 위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위탁아동을 양육하여 오고 있다. 위탁아동의 모는 가끔 연락이 되었는데, 양육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어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동의를 해주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이 없어 병원 진료 등 행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위 사건의 경우 친권자가 존재하여 종전 판례에 따르면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권상실을 우선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위탁부모는 청구인인 위탁아동의 특별대리인이 되기 위하여 20년 11월경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으나 친권자의 주소지 관할에 따른 이송이 있었다. 또한 법원에서 위탁부모를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아 이를 취하하고 다른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여 21년 3월경 사건을 취하하게 되었다. 위탁부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다른 법원의 결정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본 사건인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접수되었으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 친권자가 없는 경우 시설후견인의 역할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동은 기존에 생활하던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하려면 매년 보호시설의 장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려면, 법원에서는 보호시설의 장을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보고 심판 과정에서 보호시설의 장의 후견인 사퇴나 후견인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나타나거나 입양 또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막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설미성년후견인의 지위는 임시적인 후견인임무대행자로서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당연히 그 지위를 잃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시설미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 보호시설의 장도 이러한 문제에 동감하여 본소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 사례2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각하

내용

위탁아동은 13년 5월경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어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미성년후견인후보자(위탁부모)는 아동보호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위탁아동을 만나게 되었다. 가정체험을 통하여 아동보호시설과 집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위탁아동은 5살 무렵부터는 시설에 돌아가기 싫어할

정도로 미성년후견인후보자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위탁아동은 생후 10개월부터 미성년후견인후보자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위탁가족을 친가족으로 알고 있어 시설에 있게 되는 것이 위탁아동의 정서에도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미성년후견인후보자는 20년 1월 ○○시장으로부터 위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은행 업무 등 행정적 불편이 발생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본소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였다.

결과

위 사건의 경우 후보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후보자는 미성년후견인 교육까지 법원에서 이수한 상태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보겠다는 법원의 갑작스러운 판단으로 보호시설 장의 후견인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각하하였다. 즉시 항고를 통하여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시설장 후견인 사퇴 등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되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가 다시 접수된 상황이다.

V. 결어

위의 분석 결과에서 보면 다수의 위탁아동이 친부모는 존재하나 연락두절이 된 상황에서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이 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소의 소송구조 진행과정에서 친부모의 친권상실 등이

선행되어야만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한계에 부딪친 바 있다. 민법 제928조에서는 미성년자녀에게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유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를 비롯하여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제925조) 등의 선고를 받은 경우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제927조 제1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역시 친권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별도의 친권상실의 절차를 밟지 않고 미성년후견인을 바로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민법상 조문해석의 견해 차이로 친권상실 등을 거치지 않은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법 제928조의 미성년후견 선임 사유에 “친권자에게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⁹⁾

또한 구조사례를 통해 보면 법원도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의 문제점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그런데 사례1과 같이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의 친권상실 청구를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했으나 관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금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절차를 위해 아동의 복리를 희생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렇듯 친권상실의 청구권자인 위탁아동을 대리하기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친권자의 주소지가 확인되면 이송 등으로 관할이 변경되어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권상실 청구에 대한 관할은 친권자의 주소지로 하더라도 특별대리인 선임은 위탁아동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친권자의 주소 파악 및 특별대리인

9)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위탁가정의 복리를 위한 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 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7. 11. 3), 36쪽.

선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관련 사건에서 위탁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고 양육 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미성년후견인을 원하는 위탁부모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다. 아동을 돌보지도 않고 아동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친족을 계속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미 선행 사건들에서 위탁부모가 이해관계인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결정 해 준바 있다. 법원이 위탁가정 관련 법리와 현실적인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했더라면 신청한 사건을 취하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등의 절차로 당사자들에게 절차의 지연과 복잡함이라는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위탁부모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⁰⁾

사례2에서도 법원은 임시적 후견인의 위치에 있는 보호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보겠다고 함으로써 후견인 사퇴 절차를 밟으라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새로이 하도록 하였다. 이미 선행 사건들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후견인사퇴 절차를 별도로 밟을 필요 없이 사퇴서 제출만으로 사건을 진행해 준 바 있다. 위 사례들의 경우 법원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위탁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리고, 아동의 복리 측면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진행했다면 이미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끝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고,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법원의 심도 깊은 이해와 아동 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우리 정부가 제출했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2003. 1. 31.)에서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났지만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 문제는 입법이나 재판과정에서나 별 진전이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법적, 현실적 지원이 절실하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유혜경 상담위원



10) 김상용, 위의 글, 37쪽.

가족법개정과 법률구조 사업의 확산을 위해(1)

1990년 1월 ‘동성동본 금혼법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1989년 12월 19일, 13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에 제3차 가족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날 통과된 가족법개정안은 재산상속의 남녀차별 조항 삭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등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폭적인 것이었으나 가족법 개정운동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족법 개정운동의 핵심조향이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담소는 1977년 6월에 이어 1990년 1월 다시 ‘동성동본 금혼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센터의 개설 취지는 동성동본 금혼법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를 양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피해자들을 조직화하여 이 법의 개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담소는 일단 피해자들을 접수하고 이들의 모임을 주선하여 자발적으로 개정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센터에는 한 달이 지난 1월 말에 이르러 4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대부분 20~30대의 직장인인 이들은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민주화 시대에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이 법의 폐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상담소는 이들을 중심으로 1991년 8월 29일 여성백인회관 강당에서



▲ 1991년 8월 29일 열린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발표회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강연회 및 피해자 사례 발표회’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의 허구와 어처구니없는 피해 사례를 널리 알렸으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국회 여성특위를 통한 논의를 계속해 나갔다.

또한 상담소는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1993년 11월에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41인의 소개의원을 통해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상담 통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정해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갈등 해결에 한걸음 가까이

사건번호 2019버1*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4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부부상담 5회 등 총 15회 실시

상담기간

2019. 10. 15. ~ 2020. 5. 1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31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32세, 29세)가 있다. 결혼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행위자의 첫 폭력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 신고하였다. 행위자는 2019년 5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식당일을 하고 늦게 귀가한 일로 시비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으며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결정되었다.

피해자는 초상담 한 달 전 수술을 받고 일을 쉬고 있었으나 몸이 회복되는 대로 언제든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부부 갈등요인으로 피해자는 행위자의 의심 및 경제 문제를 꼽

았고, 행위자에게 바라는 점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 것과 피해자를 의심하지 말 것을 꼽았다. 피해자는 이혼의사가 있었지만 자녀들의 만류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이 소득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바라는 바는 없었다.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여 돈을 벌기, 폭언하지 않기, 말조심하기, 술 먹고 대화하지 않기 등을 정하였으며, 피해자는 말을 조심히 하고 대화를 차분하게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건강관리 잘하기와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부부는 각자의 실천과제를 잘 이행하였고, 상담기간 중 폭력은 재발하지 않았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중간점검시 5점, 종결 시 9점으로 평가하였고,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관계가 개선된 점을 변화된 점으로 꼽았다. 피해자는 경제적 책임감이 없던 행위자가 꾸준히 일하고 생활비를 규칙적으로 준 점을 변화로 인정하였다. 상담 진행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담시간을 단축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혼 인 ⑦

● 생활비 때문에 진 아내의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Q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을 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나가 벌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웃에서 빚을 얻어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로 인해 생긴 빚에 대해 남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A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라도 남편에게는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귀하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도 없고 수입이 있으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귀하가 이웃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다면 남편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 아내 모르게 진 남편의 빚은 아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

Q 남편은 결혼 이후 뚜렷한 직장 없이 집에서 놀다가 몇 년 전부터 다단계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 집에 갖다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은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전세보증금도 제 명의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모르게 5천여만 원의 빚을 저서 채권자가 집으로까지 찾아와서 갚으라고 야단입니다. 남편이 저 몰래 진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A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연대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의 빚이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아내가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는 2년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가족들이 살고 있던 남편 명의 집을 재산분할로 받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재산과 수입을 모두 혼자서 관리하였고, 저에게는 가게와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저를 경제적으로 소외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당시 저는 남편에게 집과 토지 등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하여 남편에게 주식과 예금 등 다른 재산들이 많았고, 이러한 재산들에 대하여는 분할받지 못한 저를 남편이 멍청하다며 놀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숨겨놓았던 재산들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법원은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참조). 따라서 귀하가 협의이혼 당시 알지 못하였던 주식과 예금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성질상 중단, 중지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불변기간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습니다. 민법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이유는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때까지 청구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남편이 예금이나 주식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은닉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귀하가 소송 중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 등을 통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2년 6개월 전 이혼한 귀하의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귀하의 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민선 변호사



1886년 5월 미국 시카고,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발포해 노동자 4명이 죽고 여럿이 다쳤다. 이튿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 7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폭탄을 투척한 범인을 잡겠다고 노동운동 지도자 수백 명을 체포해 그중 8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폭탄을 던졌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단지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사형 당했고, 1명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시카고의 8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세계의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헤이마켓 사건'을 기리기 위해 5월1일을 메이데일로 정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 노동절로 지낸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이다. 굳이 노동 대신 근로, 노동자 대신 근로자,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을 고집하는 사회에 대해 노동자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어찌 신성한 교직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가'라고 일갈했던 보수 언론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여론에 답답함을 느꼈던 시절이 지속되는 느낌이다. 교사는 신성한 직업이고 노동은 비천한 것이라는 그 천박한 생각이 아직도 상당히 여전해 보인다.

이런 세상에서 자크 랑시에르의 전설적인 책 『프롤레타리아의 밤』을 읽었다.

그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밤, 그들이 책을 읽고 책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였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방대한 분량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 풀어낸 역작이 바로 『프롤레타리아의 밤』이다. 즉

『프롤레타리아의 밤』은 낮과 밤의 분할 속에서 밤을 갖기를 거부한 자들, 혁명적 파리지앵과 반동적 (목가적) 촌놈들이라는 분할 속에서 '촌'도, 촌놈도 되기를 거부한 자들이 밤을 거부하고 날밤을 세우며, 목숨을 걸고 꿈에 몰두한 이야기이다.

책은 전체 3부로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830년 7월 혁명에 참여한 노동자들로부터 탄생한 생시몽주의 노동자 저널들과 거기에서 펼쳐진 생각과 사상들에 대한 독해에서 시작해(1부),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지속적으로 발전해간 생시몽주의 실천들과 논쟁들을 다루고(2부), 마지막으로 이집트와 미국에서 시도된 이카리아 공동체 건설의 실패와 그에 따른 환멸을 다루면서(3부) 끝난다. 랑시에르는 시인이자 목수인 고니, 양재사 데지레 베레, 내의 제조공 잔 드루앵, 계량용기 제조업자 피에르 뱅사르 같은 인물들이 내는 수다스럽고 이질적인 목소리들을 주목하며 지배 담론의 질서 안에서 '자리를 벗어난 말하기'라는 파열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는 1940년 알제리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8대학에서 1969년부터 2000년까지 미학과 철학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그에 의하면 "고립된 발화의 역사. 노동자 집단의 발화를 알아듣게 해주는 거대 담론들의 원리 자체와의 불가능한 동일시의 역사. 대중 애호가들이 부단히 덮어버려야만 했던 이중성과 모방들의 역사. 누군가는 거기서 프롤레타리아적인 대문자 이론과 혼인하기 직전의 젊은 노동운동에 대한 빛바랜 추억의 사진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숙현 편집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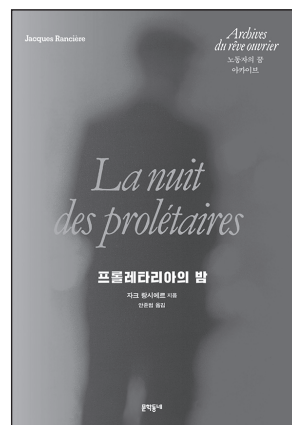
프롤레타리아의 밤

노동자의 꿈 아카이브

자크 랑시에르 지음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202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동계방학 기간 현장실습을 한 대학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전 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두 달 동안의 현장실습을 통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학부생의 신분으로 학교를 넘어 외부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었지만, 상담소는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제가 기대했던바 이상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일과가 마무리될 때마다 하루 동안 각자가 맡았던 일, 느낀 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해주는 이야기와 그에 대해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언급해주시는 것들이 향후의 실습 업무를 위해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따지는 문제, 친생자 관련 소송, 공시송달, 보정명령 등 전공 수업에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의문점과 궁금증에 대해 상담소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께 여쭙보며 다방면으로 생각의 깊이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 연수를 통해서는 그간 수업에서 배워왔던 다양한 법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가정폭력, 양육비, 상속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건네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털어놓고 싶어서 전화 상담을 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가사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 문제라기보다는 사적인 가정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남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반복되는 폭력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담자가 질문하는 점과 실질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으며, 상담자가 해야 하는 역할은 다방면의 깊이 있는 질문들을 던지며 끊임없이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 상담 연수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즈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실수는 내담자의 말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매몰되어 답이 정확히 떨어지는 단순한 대답을 건네는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전화 상담을 할 때는 문자나 온라인, 방문 상담을 할 때와는 달리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 알 방법이 없기에, 한 번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는다면 그를 절대 수정할 수 없게 되며,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만큼 혼자 힘으로 상담을 해결해나가며 유능감을 얻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파산·면책·개인회생 서류를 통해 소송 구조를 받는 사람들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엑셀과 서류를 통해서 보았던 숫자화되고 문서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객관화된 데이터처럼 느껴졌었는데, 신청인들이 직접 쓴 진술서를 읽고 나니 그들의 사정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약자, 즉 노숙인이나 노인들뿐만 아니라 명문

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경제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이게 된 케이스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강하게 느꼈던 점은 특정한 사람들만 경제적 약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보증채무와 같은 법적 요인에 얽혀 제3자의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며, 단순히 법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상담소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률구조 사례들과 ‘사랑이법’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자는 자의 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부가 자의 모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며, 각종 복지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가족관계등록부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간절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법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조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금 실감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업무 보조처럼 보이는 일들도 모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법률 구조나 법 개정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실감하여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의 상담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책이나 법조문, 판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바를 넘어서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앞장서 봉사하시고 크고 작은 도움을 아끼시지 않는 선생님들과 변호사님들을 보며 저 또한 강자들의 창이 아닌 약자들의 사회적 방패로서 기능하는 법률복지 구현에 적극 기여하고 싶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너무나 소중한 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소장님 이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종 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현장실습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듣고 힘든 일이 많은가 싶어서 내심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할 지 아는 바가 없어 우왕좌왕 하기도 했지만 벌써 연수소감문을 쓰는걸 보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연수교육과 업무활동이 있었는데, 그중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였습니다. 가족법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이 가족법의 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였는데 내용은 가족법의 전문지식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였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문위원 중 한 교수님이 법을 실제 어려움 있는 사람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법학과 4학년이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법의 적용과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조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아, 법조인은 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여러 학설이 있음을 배웁니다. 하지만 단지 이론의 문제이고 뜬구름처럼 머리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나도 법 개선의 방향, 해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고 무작정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지도 어렵듯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방향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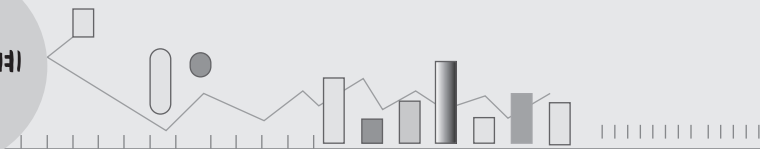
글. 그림 / 장차현실



오늘 하루...
충분히 감사합니다~~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
지금의 시련과 살아 남으려는
노력은 삶을 성장시켜준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부 방문단과 간담회 가저

본소는 4월 9일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부 방문단 일행을 맞이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본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직후인 1998년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가정폭력행위자를 수탁 받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상반기 소년, 가정, 아동보호 위탁기관 방문 계획에 따라 본소를 방문하였다.

8층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곽배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본소와 서울가정법원간의 오랜 업무협력 관계를 재조명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본소가 기꺼이 방문을 수락하여 준 점과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을 효과적으로 잘 집행하여 주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본소의 주요 연혁,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상담 현황, 가정폭력관련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고, 이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의와 본소의 답변 및 건의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개별상담 시 활용되는 가정폭력의식개선을 위한 교육동영상 “꽃으로도 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편집본을 시청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 중인 음주문제 집단상담을 참관하였다.

간담회에 이어 재판부 일행은 집단상담, 교육강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의실과 상담실, 상담소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전시 등을 돌아보았다. 재판부 일행은 본소 방문을 통하여 보고자 하였던 바를 충분히 보았고, 수탁상담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본소를 방문한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재판부는 가정보호1단독 전안나 부장판사, 가정보호2단독 전경태 판사, 가정보호3단독 김미호 판사, 가정보호4단독 홍영진 판사, 가정보호5단독 표현지 판사, 윤소영 조사관, 강동숙 조사관이 다.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박상진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서울특별시 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지난 4월 27일 본소는 서울시립 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도영)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양 기관은 노숙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교육·홍보, 신용회복 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립 영등포보건종합지원센터 임도영 센터장, 임영민 팀장과 본소의 조은경 상담위원, 전규선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본소는 법률구조를 더욱 확대하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회생의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담소 홈페이지 개편

본소는 지난해부터 9개월 여 동안 기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여 4월 5일 새롭게 개설하였다.

새롭게 문을 연 본소 홈페이지는 기존의 통합 형태에서 법률구조, 가정폭력상담, 교육, 출판홍보, 조사연구, 가족법 개정운동본부, 도서실 등 각 파트별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구성으로 변경하여 기존 홈페이지보다 접근이 더 용이해졌다. 또한 법률정보 및 상담소의 다양한 영상 및 자료에 대해 전자문서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데스크탑, 모바일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본소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상담 창구 등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의 편의에 맞추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작업

을 실시하며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화면 2면)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4월 상담통계

총 건수 6,005					
법률상담 (5,225)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순회
1,012	4,083	126	1	1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597		43		140	

• 인터넷 정보 이용 20,987

2021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005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225건(87.0%), 화해조정 597건(9.9%),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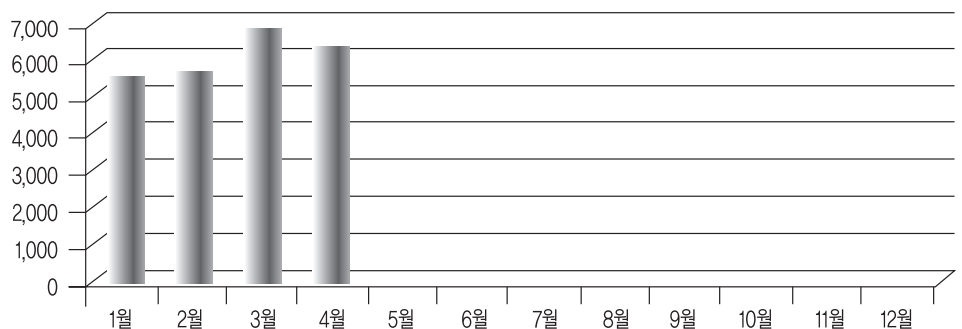
등 서류작성 43건(0.7%), 소송구조 140건(2.3%)이었다.

법률상담 5,225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4.1%→4.2%), 위자료·재산분할(9.2%→9.8%), 친권·양육권(5.4%→6.1%), 양육비(7.0%→7.4%), 면접교섭권(2.6%→2.7%), 친생부인(0.5%→0.8%), 친생자존부(1.9%→2.1%), 혼인무효·취소(0.3%→0.4%), 부양(1.1%→1.4%), 유언·상속(6.1%→6.8%), 가족관계등록부(3.2%→3.3%), 개명(0.3%→0.5%), 성변경(0.7%→0.9%), 파양

(0.2%→0.3%), 가사절차(6.9%→7.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파산(2.1%→2.4%), 민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225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12건(19.4%), 전화상담 4,083건(78.1%), 인터넷상담 126건(2.4%), 서신상담 1건(0.0%), 지상상담 1건(0.0%), 순회상담 2건(0.0%)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4. 7.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4. 20. 강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원역량강화 교육
- 최수진 상담위원

● 대학생 현장실습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4.26~8.31) 조주현

● 가정법원 출장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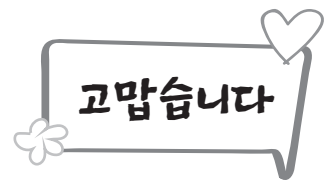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9일 한국가족법학회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2021년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의 다수부모 가족제도(multiparent family)'에 대한 토론발표를 하였다. 13일에는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머니투데이에 '비혼모가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칼럼을 게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지역 신임 학대예방경찰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대응 실무교육」에서 "가정폭력처벌법 및 주요 결정례"를 주제로 3월 31일에 이어 2회차 강의를 하였다. 15일과 22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상회복 등 청구 사건과 이혼등 청구 사건을 각 조정하였다.

곽배희 소장, 'EBS 초대석' 촬영

곽배희 소장은 4월 6일 EBS 일산 스튜디오에서 'EBS 초대석' 촬영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대하는 대담 프로그램으로 주인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대한 고견과 제언을 듣고 아울러 오늘날의 철학과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경험들이 있었는지 듣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민지, 김선경, 김수정, 김준호, 김지우, 김지윤, 김혜원, 김효진, 류지원, 문예빈, 박성환, 박지희, 신수민, 예성은, 오지현, 윤채은, 이상은, 이송현, 이시현, 이용안, 이종원, 임지윤, 장선우, 장성윤, 전우인, 정수나, 정유나, 조예람, 조예진, 조주현, 최세은, 한봄이, 한승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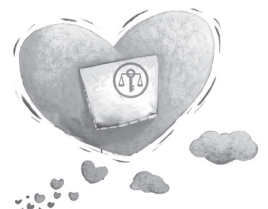
후원 고맙습니다

• 평생회원이 되신 분

김경수, 박은정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홍진범,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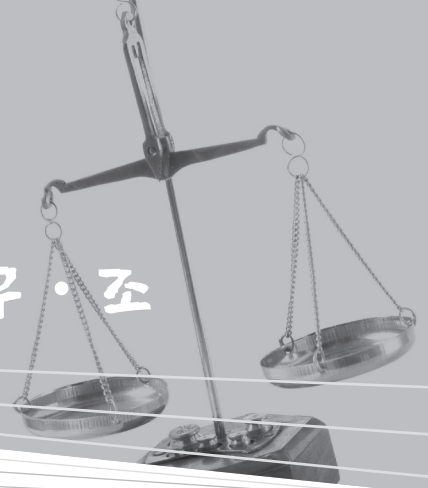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화풀이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9-156

담당 : 최국신 변호사

사건명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내용 : 원고(여, 61세)와 피고(남, 63세)는 1979년 7월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초 농협에 다니다 직원들과의 불화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는 대출을 받아 고기잡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뱃멀미가 심한 원고에게도 일을 도우라고 강요하였다. 피고는 바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원고에게 화풀이를 하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고기잡이 사업 실패 후에도 피고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원고의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멸치잡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는 사업 수입에 대한 공치사를 본인에게 돌리며 원고의 친정 부모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이유 없이 원고에게 폭언하거나 살림을 부수었다. 이처럼 폭력적인 성향이 심한 피고는 때때로 원고의 몸을 밟거나 짓이키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온몸에 상처가 나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 2019년 2월경 쉼터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의처증 증세를 보여 원고가 동창 부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동창과의 외도를 의심하여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원고를 비방하고 다녔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 2. 1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2021. 2. 28.까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선박(명칭: 000, 어선번호: 0000-000)에 관한 가압류 결정(해남지원 2019즈단000)의 집행을 해제하고, 그 신청을 취하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0-444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내용 : 원고(여, 44세)와 피고(남, 46세)는 2003년 11월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6세, 14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혼인 후 술을 마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무리한 부부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원고를 폭행하였다. 피고의 원

고에 대한 폭언, 폭행은 혼인한 지 3년 후부터 더욱 잦아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무시하였고, 원고가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하자 자신의 술 시중을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급기야 피고는 위치추적기로 원고를 감시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원고가 경제활동을 포기하자 피고는 경제권을 독점하여 원고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원고는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원고에게 돌아오는 건 피고의 모욕과 폭언, 폭행뿐이었다. 최근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았고, 사건본인들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1. 4. 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한다.
 - (1) 피고는 2021. 4. 19. 까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한다.
 - (2) 원고는 전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법원 2020 즈단000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 (3) 원고가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4)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 (5)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5.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더 이상의 위자료,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며,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변경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7.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보증채무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564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8세)은 노숙인시설에서 공공근로와 자활근로를 하던 중 생활고를 느껴 통신사 3사에서 휴대폰을 구입 후,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기계를 팔았다. 이후 몇 개월 뒤 자활근로 급여통장이 압류되어, 신청인은 휴대폰 관련 채무로 압류가 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2020년 3월경 다른 채무로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확인을 위해 법원에 가보니 신청인의 친형이 신청인을 보증인으로 세운 뒤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않아 신청인이 압류 및 추심을 당한 것이었다. 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신청인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결국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자활근로가 끝나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50만 원의 소득이 있다. 신청인은 부지런히 저축하여 배우자와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으나 6,300만 원이라는 채무로 인해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독촉에서 벗어나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3. 23.)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754

담당 : 김상균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7세)은 2014년경 전라남도 구례에 위치한 온천관광단지에 '00호텔'이라는 상호로 작지 않은 규모의 숙박업소를 운영하였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지역에서 여러모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면서 단체관광 위주의 영업 형태였던 신청인의 호텔은 단체관광과 수학여행이 제한되면서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경 중등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퍼지면서 관광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유지해보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소유 중이던 호텔은 경매로 처분되었고, 미처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았으나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으로서 변제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평균 60만 원을 받으며 노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신청인은 간경변증을 앓고 있어서 장시간 근로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이다. 이처럼 저소득으로 힘겹게 생활 중인 신청인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4. 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아내와의 교류를 끊은 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0-589

담당 : 서지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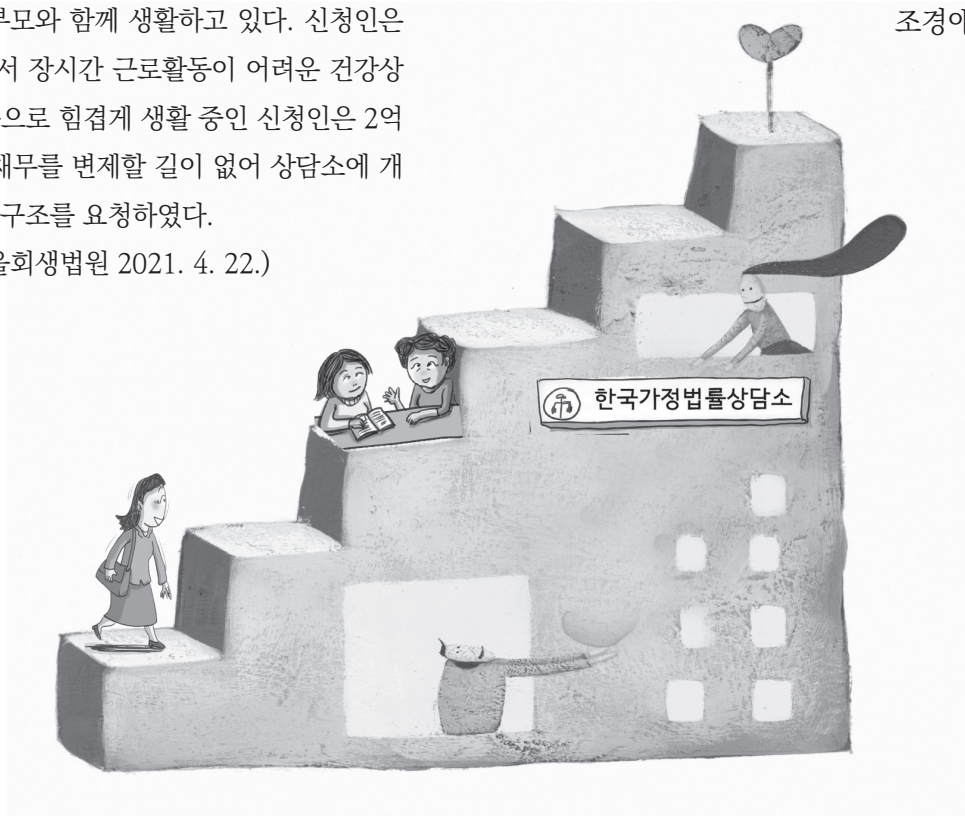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0세)와 피고(남, 56세)는 1990년 10월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이다. 2003년경 피고는 외도를 하다가 결국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는 본인의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다른 친족들과의 교류마저 단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의 도움 없이 시부모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적인 생계유지도 힘들어졌다.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고자 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연락두절된 배우자가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2.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1년 6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6월 14일, 6월 28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무료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 시 : 2021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8월은 휴강)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 ▶ 강 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일 시	강 의 제 목
5월 27일	부부갈등이 만들어지는 경로
6월 24일	외도
7월 22일	어린 시절의 경험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9월 23일	갈등을 일으키는 성격과 가치관
10월 28일	갈등이 해결 되어 질 때 볼 수 있는 관계 양상
11월 25일	성숙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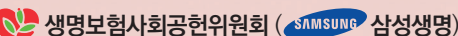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5월 20일	화내는 사람, 웃으며 받아요.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6월 10일	화와 친구하며 살아요.	
7월 8일	정신건강의 중요성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돌보는 노력	본소 차연실 상담위원
9월 9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4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	
11월 11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생활법률강좌

- ▶ 일 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 시 : 2021년 6월 / 8월 / 10월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SAMSUNG 삼성생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1년 6월/8월/10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함께하는 청렴! 지켜야 할 약속!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